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방 송 통 신 발 전 기 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(2022.10.15.)를 계기로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19152호, 2023. 1. 3. 공포, 7. 4. 시행)되면서, 통신재난 관리체계 수립·운영 대상 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(데이터센터 사업자)이 포함됨에 따라,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정기준 설정(안 제23조제2항 신설)

하루 평균 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비중을 기준으로,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

나.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지정기준 설정(안 제23조제3항 신설)

전년도 매출액,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 및 수전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, 일정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을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로 지정

다.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 추가(안 제23조의3제1항제4호 개정)

전산실 바닥면적, 수전설비의 용량 등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적합한 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을 신규 추가

라.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지도·점검의 위임 및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(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30조제2항제3호 개정)

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 지도·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및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

마. 주요 부가통신사업자 및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(안 별표1 개정)

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장애 서비스 비율을,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경우에는 장애 시설 비율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기준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부처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“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(이하 이 조에서 “이용자 수”라 한다)가 1,000만명 이상인 자
2.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(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대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(이하 이 조에서 “트래픽 양 비중”이라 한다)이 100분의 2 이상인 자
3. 전년도에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여 국민피해를 유발한 자로서,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3년 이하의 한시적인 방송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.

이 경우, 이용자 수 100만명 미만이면서 트래픽 양 비중 100분의 1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.

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“시설 규모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전산실 바닥면적이 22,500m²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.

제23조의2제1항 중 “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”로 한다. 제23조의3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전산실 바닥면적, 수전설비의 용량 등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3(통신재난관리 전문기관 지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(통신 분야로 한정한다)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조사 및 기술적·관리적 지원 업무
2.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·점검에 관한 기술적 지원(법 제35조제1항제1호, 제4호 및 제5호의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도·점검으로 한정한다)
3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한 이 영 제

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 및 정보 공유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30조제2항제3호 중 “법 제35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35조제1항제1호, 제4호 및 제5호”로 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3)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	고려사유	
매우 중대한 위반행위	기간통신 사업자	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·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,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(이하 “방송통신재난”이라 한다)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전국단위인 경우 등
	부가통신 사업자	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·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,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소관 주요 방송통신서비스의 3분의 2 이상이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
	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등	위반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와 핵심적·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,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기능 3분의 2 이상이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
중대한 위반행위	기간통신 사업자	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,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단위 이상이나 전국 단위보다 작은 범위인 경우 등
	부가통신 사업자	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,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소관 주요 방송통신서비스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이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

	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등	위반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,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집적정보통신시설 기능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이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
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	기간통신 사업자	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,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예상 피해규모가 시·도 단위보다 작은 범위인 경우 등
	부가통신 사업자	위반행위가 방송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,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소관 주요 방송통신서비스의 3분의 1 미만이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
	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등	위반행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유지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,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 집적정보통신시설 기능의 3분의 1 미만이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주요방송통신사업자)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3조(주요방송통신사업자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<u>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“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u> <u>1.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(이하 이 조에서 “이용자 수”라 한다)가 1,000만명 이상인 자</u> <u>2.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(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대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(이하 이 조에서 “트래픽 양 비중”이라 한다)이 100분의 2 이상인 자</u>

<신 설>

제23조의2(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
회의 구성) ① 법 제35조의2제1
항에 따른 통신재난관리심의위

3. 전년도에 소관 방송통신서비
스에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
여 국민피해를 유발한 자로서,
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통
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(이하
“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”라
한다)의 심의를 거쳐 3년 이하
의 한시적인 방송통신재난관
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
는 자. 이 경우, 이용자 수 100
만명 미만인면서 트래픽 양
비중 100분의 1 미만인 자는
제외한다.

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
“시설 규모, 매출액 등이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
자”란 전산실 바닥면적이 22,50
0m²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
량이 40MW 이상인 집적된 정
보통신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
를 말한다. 다만, 전년도 매출액
이 100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한
다.

제23조의2(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
회의 구성) ① 통신재난관리심
의위원회-----

원회(이하 “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~ ⑪ (생략)

제23조의3(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기준 등)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4. (생략)

② ~ ⑦ (생략)

<신 설>

-----.

②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23조의3(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기준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전산실 바닥면적, 수전설비의 용량 등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규모

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7조의3(통신재난관리 전문기관 지정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1.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(통신분야로 한정한다)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조사 및 기술적·관리적 지원 업무

	2. <u>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·점검에 관한 기술적 지원(법 제35조제1항제1호, 제4호 및 제5호의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도·점검으로 한정한다)</u> 3. <u>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한 이 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 및 정보공유</u> ②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
제3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 1. 2. (생략) 3.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송	제3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

통신설비 설치지역이나 사업 장 등에 대한 출입 및 지도· 점검(<u>법 제35조제1항제1호</u>의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출입 및 지도·점검으로 한정 한다) 4. ~ 6. (생략) ③·④ (생략)	----- ----- ---<u>법 제35조제1항제1호, 제4</u> <u>호 및 제5호</u>----- ----- ---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·④ (현행과 같음)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771